

대전지방법원 2021. 4. 28 선고 2020가단12927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 론 종 결 2021. 4. 14.

판 결 선 고 2021. 4. 2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중구 G 대 517.7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, 3, 4, 8, 9, 10, 11,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81.7㎡에 관한 별지 목록 ‘지분’란 기재 각 소유권지분에 관하여 2020. 10. 28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각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 조영범

별지